

초점

September 2026 No.4

AI 워싱(AI Washing)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김지혜 전문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정책연구실 AI사회정책그룹

AI 워싱(AI Washing)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김지혜 전문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정책연구실 AI사회정책그룹, jihye@kisdi.re.kr

요약

- 생성형 AI의 대중적 확산과 시장에서의 파급력이 높아지면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들의 경쟁도 가속화되는 추세임. 이러한 시장의 요구와 경제적 인센티브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과 서비스 혁신성을 과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이 때문에 실제 AI를 도입하지 않거나 그 활용 정도가 미미함에도 마치 고도화된 AI 기술을 탑재한 듯 과장·과대 홍보하는 소위 AI 워싱(AI Washing)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본고는 AI 시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마케팅의 하나로 AI 워싱을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 이론에 준거하여 살펴보고자 함. 세 가지 메커니즘인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가 기업들의 AI 워싱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후속 연구에서 검증 가능한 명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실제 AI 워싱 사례들의 법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주로 투자 유치 목적의 AI 워싱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실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국가 정책 기조의 변화가 AI 워싱 제재 및 규제에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 보았음
- AI 워싱 제재를 둘러싸고 공정한 시장 경쟁과 소비자 보호라는 찬성 견해와 기술 혁신 위축이라는 반대 견해가 상존하는 만큼 산업 생태계 이해 당사자를 고루 고려한 정책 기조와 추진이 필요

이 개요

- 인공지능(이하 AI)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장에서의 파급력이 높아지면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들의 경쟁도 가속화되는 추세

※ 스탠포드 인간중심 AI 연구소의 「The 2025 AI Index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약 78%가 AI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생성형 AI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339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시장의 경쟁 구도 속에서 실제 AI 기술을 개발·적용하지 않았으나 AI를 적용한 것처럼, 또는 그 수준을 과장하는 일종의 소비자 기만 마케팅인 인공지능 워싱(이하 AI 워싱)*이 발생

* 친환경을 표방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과 유사한 AI 워싱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정의를 이용하여 자사 제품에 사용하는 AI 기술 수준을 과장하는 마케팅 전략(TechTarget)

- 최근에는 기업의 제품·서비스 뿐 아니라 인력 감축·대체 등 기업의 노동력 절감과 관련하여 재정적 및 기타 사유에 의한 감원을 AI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탓으로 돌리는 AI 워싱 사례가 발생

• 아마존(Amazon) CEO 앤디 재시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서한(2025.6.)에서 “향후 몇 년 안에 회사 전반에 걸쳐 AI를 광범위하게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이 향상되어 전체 기업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이어 AI 기술 혁신성으로 인한 조직 간소화를 들어 감원(2025.10. 1만 4천명, 2026.1. 1만 6천명)

※ 그러나 NPR의 알리나 셀류크(Alina Selyukh)에 따르면 아마존은 투자자들로부터 재정 긴축 압박을 받고 있었고, Remio의 에단 카터(Ethan Carter)는 대규모 해고 발표가 투자자들의 긍정적 인식 제고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

• 블락(Block Inc.) CEO 잭 도시는 AI 도입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4천 명 감원을 발표(2026.2.)

※ 가디언(the Guardian)의 블레이크 몽고메리는 블락이 보유한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와 주가 하락이 감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

- AI 워싱은 미시적 관점에서 소비자 기만과 투명성, 과장·허위 광고 등 기존 법률 위반 소지, 거시적 관점에서 적절한 자원의 배분 저해, 기업 및 기술에 대한 소비자 신뢰 하락 등 부정적 결과 초래 가능

- AI에 대한 과장이나 홍보에서 나아가 실제 기술의 유용성 검증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고는 AI 워싱의 개념과 기업의 AI 워싱 원인을 제도적 동형화 이론적 틀에서 검토하고, AI 워싱 사례의 법적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02 AI 워싱의 개념적 정의

- 이하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AI 워싱의 개념적 정의와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함

I AI 워싱 정의

- AI 워싱은 2019년 AI Now Institute가 AI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AI 역할을 과장·왜곡하는 행위를 지칭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짐
 - AI가 실제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것처럼 기업이 홍보하는 현상을 문제시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Gary Gensler 위원장이 투자자문사들의 AI 기술 사용에 대한 허위 광고 기소 건에 관해 설명하며 'AI 워싱' 용어를 공식 언급
 - AI 워싱을 AI의 사용 여부나 방식을 허위로,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보고,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
- 비교적 최근 연구인 Elhajjar&Itani(2025)의 AI 워싱 정의에 따르면 기업이 상품, 서비스, 운영에서 AI를 의도적으로 과장(overstate)하거나 부풀리거나(exaggerate) 왜곡(misrepresent)하여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

I AI 워싱 관련 선행연구

- Elsayed(2026)은 AI 워싱을 실제적인 기술 역량이 결여된 채 상징적으로 AI 주장을 하는 디지털 정당성 구축과 유지하려는 전략적 시도라며, 사회 기술적(Socio-technical) 정당성 확보 전략으로 개념화
- Ozturkcan&Bozdağ(2025)은 AI 워싱을 시스템의 AI 기능을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하게 과장하는 행위라고 정의
 - 주로 규칙 기반이나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기능을 자율적, 적응적, 혹은 윤리적으로 통제되는 시스템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을 의미

I 유사 용어와의 개념적 비교

- AI 워싱과 유사한 맥락에서 소비자 기만 마케팅 용어로 분류되는 그린워싱, 윤리워싱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그린워싱(Greenwashing)	윤리워싱(Ethics washing)	AI 워싱(AI washing)
등장 시기	1980년대 후반	2010년대 후반	2019년 이후
과장 대상	친환경적 성과	윤리적 책임·거버넌스	AI 기술 및 역량
주요 내용	친환경 과장 광고	윤리 원칙·윤리위원회 활용 과장	AI 기능 및 활용 과장
발생 원인	친환경 성과 측정의 어려움	윤리 실천 검증의 어려움	AI 개념 모호성 및 불투명성

출처: Delmas, M. & Burbano, V. (2011), Bietti, E. (2020), Elhajjar & Itani (2025) 내용 조합 후 저자 재구성

- AI 워싱은 기업들의 상징적 정당성 확보와 긍정적 인식을 위한 현상으로, 기존 그린워싱이 친환경적 성과를, 윤리워싱이 윤리적 책임을 과장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려 했다면, AI 워싱은 기술의 혁신성을 과장
- Elhajjar & Itani (2025)은 AI 워싱을 윤리워싱의 하위 유형으로 규정한 바 있음

I AI 워싱 유형

- AI 워싱은 크게 실제 AI 사용을 과장(Overstating) 또는 축소(Understating)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기만적 마케팅으로 실제 AI 사용 대비 역량을 과장하는 AI 워싱을 다루고자 함
- Elsayed (2026)는 AI 워싱을 AI 브랜드 및 마케팅 표현의 과장(Marketing and Branding washing), 기술적 능력 및 성능 과장(Technical capability inflation), 투자자와 시장에 전략적인 신호(Strategic signaling), 거버넌스 기반 워싱(Governance-based washing) 네 가지로 구분
- 김태형 (2024)은 AI 워싱 유형을 과장, 일부 적용, 거짓·과대 홍보의 유형과 구체적·객관적 정보 미제공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포함되는 세부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분

분류	주요 유형	내용
과장, 일부 적용, 거짓·과대 홍보	기술적 용어 남용	‘AI’,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AI’ 등 전문 용어를 과장하거나 불필요하게 사용하여 마치 고도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 (예) 간단한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을 ‘AI 기반 예측 모델’이라고 하거나, 기존 자동화 시스템이나 일반적인 최적화 알고리즘을 ‘머신러닝 활용 시스템’, ‘딥러닝 활용 최적화 시스템’ 등으로 표현
	일부 활용을 전체 활용으로 포장	특정 부서나 프로젝트에서만 제한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했음에도 기업 전체가 인공지능을 폭넓게 활용하는 것처럼 과장 홍보 (예) 제품 견적서를 AI로 발급하는 신발 공장을 AI기업으로 과장 홍보
	본질과 무관한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핵심 기능과 무관하게 부수적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었음에도, 이를 ‘인공지능 기반’ 제품으로 적극 홍보 (예) 음성 인식하는 안마의자를 AI 안마의자라고 광고하는 경우
	타사의 기술을 자체 기술로 오인 유도	외부 기업의 인공지능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이를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인 것처럼 포장 (예) GPT를 자사 제품과 연결하고는 자체 AI 제품으로 홍보하는 경우
구체적·객관적 정보 미제공	불투명한 정보 제공	“인공지능 기술로 구동되는 시스템”과 같은 모호한 문구만 사용하고, 구체적인 기술 적용 방식이나 원리를 공개하지 않아 검증을 어렵게 함 (예) AI 빅데이터 분석 투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AI 알고리즘과 데이터 정보를 미제공
	검증되지 않은 성과 주장	인공지능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데이터나 검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음 (예) AI로 판매량 증가 예측, 예측만큼의 판매량 증가를 주장하지만 데이터나 구체적 사례 미제시

출처: 김태형(2024) 내용 조합 후 표로 재구성

I AI 위상의 대표 사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2024.3.18.)는 투자자문사 델피아(USA)와 Global Predictions에 대해 AI 역량의 허위·과장 표시를 사유로 각각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 발부
 - 델피아(USA)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알고리즘을 훈련시켜 투자를 예측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해당 역량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인정
 - Global Predictions는 ‘AI 자문사’, ‘AI기반 예측’이라고 홍보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역량을 증명하지 못하며 위원회 검사 결과에 대한 별도 부인 없이 합의 진행
 - 이는 위원회의 최초 명시적 AI 위상 집행 사례이며, 당시 컨슬러 위원장이 ‘AI 위상’이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
- 코카콜라(2023)는 Y3000 캠페인에서 AI와 공동제작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제 AI의 구체적인 활용과 기술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비판

- 주로 젊은 세대를 겨냥한 한정판 제품 전담 플랫폼인 코카콜라 크리에이션즈는 Y3000 제로슈가 한정판 출시(2023.9.)를 알리며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맛’과 ‘AI 기반’을 강조

마케팅 슬로건	사람과 인공지능이 공동 제작한 최초의 한정판 (The first limited-edition flavor co-created with huma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주장	전 세계 팬들이 상상하는 ‘미래의 맛’에 대한 데이터(감정, 색상 등) 수집 후 자체 AI시스템을 활용해 3000년대의 맛과 향을 조합하여 레시피를 만들었다고 홍보
이슈	AI가 레시피 개발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술적 증거나 설명을 전혀 공개하지 않음

- 당시 코카콜라의 홍보에 대해 북미 테크 및 라이프스타일 언론매체들은 눈속임 마케팅 (gimmick)이라고 평가
 - Gizmodo(2023.9.25.)는 ‘CokeGPT’라는 표현으로 AI 활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AI를 둘러싼 과대광고(hype)라고 평가
 - Taste of Home(2023.9.12.)에 따르면 새로운 맛을 만드는 데 AI가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첨단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존 음료를 섞어 놓은 혼종에 가깝다고 맛을 평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DOJ)은 앨버트 새니거(Nate 앱 창립자)를 허위·오해 진술로 투자 유치 및 AI를 이용한 역량 허위 표시 등을 사유로 각각 민·형사 기소
 - 네이트 창립자 앨버트 새니거는 전자상거래 앱 네이트(Nate)를 머신러닝과 AI에 기반하여 다양한 리테일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구매를 완료하는 모바일 앱이라 홍보
 - 앱의 자동화율을 90% 이상이라고 했으나, 사실 해외 인력에 의해 수동 처리
 - 해당 사건을 담당한 매튜 포돌스키(뉴욕남부지방검찰총장 대행)는 Saniger의 기만 행위는 투자자, 합법적인 스타트업, 혁신 및 궁극적인 AI 개발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기업들의 AI 워싱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

03 AI 워싱 원인의 이론적 검토

- 본고에서는 AI 워싱의 원인을 ‘비도덕적인 개별 기업(인)의 결정’이 아닌 ‘특정 산업 생태계 내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들의 구조적 행동’의 관점에서 살펴봄. 이하에서는 기술 채택, 특히 AI 도입에 있어 AI 워싱 원인을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의 이론적 틀에 준거하여 살펴보고자 함

I 제도적 동형화 이론

-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는 신제도주의 이론의 핵심 매커니즘으로 동일한 환경 조건에 직면한 조직들이 서로 닮아가는 제약적 과정(Constraining process)을 의미
 - George et al.(2020)에 따르면 신제도주의의 핵심 가정은 특정 제도가 정당성을 추구하는 개인과 조직이 따라 할 규칙을 형성한다는 것이며, 공공부문 행위자 ‘적절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조직 형태와 행동에 관한 역할, 요건, 이해, 가정, 신념, 각본이 지배하는 환경’의 결과로 제도적 동형화가 발생(DiMaggio et al., 2012; George et al., 2020에서 재인용)
 - DiMaggio&Powell(1983)는 현대의 조직들의 구조와 관행이 점점 유사해지는 동질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개별 조직의 합리적인 결정이 모여 결과적으로는 현장의 다양성을 줄이는 집합적 효과를 야기한다며 제도적 동질화를 구체화
- 초기에는 주로 공공 부문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민간 부문에까지 적용하는 연구가 확산
 - Frumkin&Galaskiewicz(2004)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비교를 통해 공공 조직이 민간 조직에 비해 동형화 압력에 더 취약하며, 더 명확한 제도적 압력을 받는다는 연구를 수행
 - 2000년대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등 정당성(legitimacy) 확보 차원에서 야기되는 제도적 동형화 관련 연구 확산
 - Campbell(2007)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행동에 대한 제도 이론을 제시하면서, 기업의 경제적 조건과 CSR 행동 간의 관계가 제도적 조건에 의해 매개된다고 주장
 - Wright&Willie(2025)가 호주 100대 기업의 이사 구성을 분석한 결과, 이사회 구성에서 제도적 동형화가 이사 임명의 전문직화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점차 협소한 범위의 임원진을 양산하는 결과를 확인

- 조직이 서로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발견되며, 제도적 압력 강도가 비교적 평균적으로 높은 공공부문 대비 민간에서는 산업별 차이가 나타나는 차이가 존재
- 이에 본고에서는 높은 불확실성을 가진 인공지능 기술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지면서, 민간 부문 조직의 동형화 동기인 정당성, 경쟁 우위, 투자 유치 등이 어떻게 AI 워싱과 연결될 수 있는지, 제도적 동형화 이론의 세 가지 메커니즘에 따라 이를 구조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I 제도적 동형화의 메커니즘

- 앞서 설명한 DiMaggio&Powell(1983)은 조직의 동형화를 이끄는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압력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제도적 동형화 이론의 핵심 분류 체계
 - 세 가지 메커니즘은 실제에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동형화 메커니즘은 서로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음
-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
 - 강압적 동형화는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조직이나 사회 문화적 기대치로부터 가해지는 공식적, 비공식적 압력에 의해 발생
 - 이는 정부의 명령이나 규제 등 강제나 설득의 형태를 가지며, 이러한 법적 제도적 환경은 조직이 기술적 요구보다는 더 넓은 제도의 규칙에 동조하도록 만듦
-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
 - 조직이 직면한 모호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혁신보다는 정당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른 조직을 모델링하는 것을 의미
 - 조직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목표가 모호하거나 환경이 불확실성을 창출할 때, 모방을 통해 이미 검증된 모델을 의례적으로 도입
-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
 - 전문직업화(Professionalization)에서 기인하는 규범적 동형화는 교육이나 인맥을 통해 얻는 전문성에 기인
 - 유사한 교육과 사회화를 거친 전문가들이 여러 조직에 배치되고 널리 인정된 규범과 표준을 조직 전반에 확산
 - 이로 인해 각기 다른 조직에 속하더라도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나 결정 과정, 방식이 유사해지는 것을 의미

- 세 가지 메커니즘을 기준으로 기업의 AI 워싱의 발생 원인을 검토해보면, 강압적 동형화는 투자자 또는 규제 기관 등의 압력, 모방적 동형화는 기술 불확실성에 기반한 선도 기업 및 성공 모델 벤치마킹,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가 네트워크에 의한 네트워크 형성과 영향력 확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이 때문에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이 커질수록 외부 투자 유치, 규제 압력, 시장 우위 확보를 위한 선도기업 벤치마킹, 기술 우선 조직 문화 확산 등으로 AI 워싱이 확산될 가능성도 상존

04 AI 워싱 관련 법적 쟁점: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I AI 워싱 관련 해외 대응 사례

- 각 국가의 AI에 대한 정책적 관점에 따라, AI 워싱을 다루는 법적 근거 차이에 따라, AI 워싱 관련 규제 및 법적 대응 기조가 상이하게 나타남
 - AI 워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투자자·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투자 유치 등을 직접 제재한 미국 사례를 포함하여 기존 법률을 근거로 AI 워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 (미국) AI 워싱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DOJ) 등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증권법, 투자자문업법, 연방거래법 등 기존 법률을 근거로 법적 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
 - 정권 교체에 따른 AI 정책 기조 변화가 명확한 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 행정명령 제14179호(2025.1.23.)로 이전 바이든 정권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 행정명령 제14110호(2023.10.30.)를 폐지 조치
 - AI 관련 최상위 정책 가치가 ‘안전과 신뢰’에서 ‘혁신 및 AI 영향력 확대’로 변화하였지만, AI 워싱에 대한 집행은 기존 법률로 유지되어 정치적 변화가 AI 워싱을 규제·제재하는 데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아 다소 안정적인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
 - 혁신의 가속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소매 투자자 보호 및 신기술 관련 금융 범죄 방지를 위한 증권거래위원회(SEC) 내 전담부서(CETU: 사이버 및 신기술 전담 부서)가 신설

- 다만, 기만적 마케팅에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는 지속하면서도 기술이 야기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기술과 산업 혁신 차원에서 제재를 보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Rytr 동의명령 취소 사례, '25.12.)
- (유럽) 유럽연합의 경우, AI Act 제5조를 통해 AI 기반 조작 또는 기만 기술이 개인의 기본권과 자율적 의사결정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된 AI 관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 적용 범위를 구체화
 - AI Act(2024.8.1.) : 제5조 금지된 AI 관행(Prohibited AI Practices)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만적, 조작적 행위가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경우를 규정

[EU AI Act Article 5(1)(a)에 대한 부연(recital 29)]

AI 기반 조작 또는 기만 기술이 개인의 자율성, 의사결정,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고, 행동을 실질적으로 왜곡하여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의 출시와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 금지된 AI 관행에 관한 가이드라인(2025.2.4.) : 유럽의 가치와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유로 금지된 인공지능 관행에 대한 해석과 적용 지침을 제시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발표

[금지된 AI 관행]

(i) 유해한 조작 및 기만, (ii) 취약성의 악용, (iii) 사회적 점수화, (iv) 개인의 범죄행위 위험평가 및 예측, (v)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무차별적 데이터 수집, (vi) 감정 인식, (vii) 생체 정보 기반 분류, (viii)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 단, 유럽의 경우 AI 기술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불안 요소에 대한 언급이지 기업의 기만적 마케팅으로서의 AI 워싱을 명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들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집행의 초기 단계로서, 가이드라인과 제도의 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실효를 평가하기는 시기상조
- (영국) 영국은 AI 워싱을 전담하기보다 기존의 광고규제 체계와 소비자보호법 등을 적용하여 AI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시정 중심으로 접근

- 광고표준위원회(ASA)는 영국 전역의 미디어에 게재되는 광고 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 기존 광고 규정(CAP/BCAP)에 따라 위반 여부 확인 후 시정 명령
 - 해당 광고 규정에 AI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칙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오인 광고(Misleading advertising)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하겠다는 입장

[CAP Code 3. 오인 광고]

- (3.1) 광고는 소비자를 중대하게 오도해서는 안 됨
- (3.7)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주장을 하기 전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유해야 함
- (3.11) 제품의 성능 또는 효과를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됨

- 경쟁시장국(CMA)은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DMCCA) 제정('24) 및 소비자 직접 집행 시행 명령('25.4.)에 따라 소비자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AI·알고리즘이 야기할 수 있는 불공정한 소비자 관행도 해당 법에 근거하여 집행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I 미국의 AI 워싱 관련 법적 제재 사례

- 허위·오도적 진술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행정절차·합의명령
 - 델피아(USA) Inc.(2024.3.18.)¹ : 투자자문사인 델피아가 AI 및 머신러닝의 사용에 관하여 규제 서류, 광고 및 소셜미디어에서 행한 허위 및 오도적 진술에 관한 행정절차
 - 고객 데이터를 주식, EFT 및 옵션 선정 등 투자를 위한 예측 알고리즘 모델에 활용하며, 집합 데이터를 활용해 지능적인 투자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
 - 증권거래위 검사 과정에서 델피아가 고객 데이터를 사용한 적이 없고, 고객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을 만든 적도 없다고 인정하며 모든 현행 마케팅 및 공시 문서를 검토하고 허위·오도적 진술 시정 조치할 것임을 밝힘
 - 제재 조치로 22만 5천 달러 제재금 부과
 - Global Predictions, Inc.(2024.3.18.)² :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및 고객 이메일 등에 최초의 규제 받는 AI 금융자문사(first regulated AI financial advisor) 허위·오도적 주장

¹ SEC AP File No.3-21894(Release No.6573, 2024.3.18.)

² SEC AP File No.3-21895(Release No.6574, 2024.3.18.)

- 자사 플랫폼이 전문가 AI 기반 예측을 제공한다고 표시하였으나,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위원회 검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
- 제재 조치로 17만 5천 달러 제재금 부과
- 투자자 기만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소
 - v. Brian Sewell 및 Rockwell Capital(2024.2.2.)³ : Sewell이 자신의 온라인 암호자산 강좌에 등록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AI, ML 기술이 투자 전략을 이끌 것으로 허위 주장하며, Rockwell Fund 투자 유도
 - Sewell은 ‘머신 알고리즘’, ‘인공지능’, ‘머신러닝 모델’, ‘극도로 빠른 인공지능, 딥러닝 및 클러스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동화된 차익거래 시스템이 가동 중이라 주장했으나 모두 허위인 것으로 나타남
 - 15명 투자자가 Rockwell Fund에 약 12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허위 정보(AI개발자·암호자산분석가, 데이터과학 석사)를 공개하는 등 기만적으로 투자 유치
 - 증권법 제17조(a)항, 거래법 제10조(b)항 및 규칙 10b-5 위반 혐의로 피고에 대한 직·간접적 증권 참여 영구적 금지, 환수 조치, 민사 제재금 등을 청구
 - 증권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4-13)에 따르면, Rockwell Capital은 부당이익 환수 및 선이자 합계 160만 달러, Sewell은 민사 제재금 22만 달러 납부 합의
 - v. Ilit Raz(Joonko Diversity Inc.)(2024.6.11.)⁴ : AI 채용 스타트업 준코(Joonko)를 AI와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 내 무의식적인 성별과 인종 편향을 식별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표방
 - 준코(Joonko Diversity)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Raz는 ‘AI를 사용하여 기업 고객과 다양한 구직 후보자를 매칭하여 기업의 다양성·형평성·포용(DEI) 목표 달성을 돕는 기술 플랫폼으로 준코를 홍보
 - 나아가 최종적으로 채용되지 않은 후보자들을 AI를 사용해 다른 기업 고객의 직무 기회에 매칭한다고 마케팅
 - 그러나 실제 준코는 이러한 역량을 보유하지 않았고, 고객에게 홍보한 채용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준코의 플랫폼 구축을 감독한 Raz 역시 플랫폼(기술)에 관한 허위 표시를 인지

³ No. 1:24-cv-00137-UNA(델라웨어 지방법원, 2024.2.2.). SEC 보도자료 2024-13, Litigation Release LR-25936

⁴ SEC No.1:24-cv-04466(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 위원회는 증권법 제17조(a)항, 거래법 제10조(b) 및 규칙 10b-5 위반의 영구적 금지, 부당이득의 선이자 포함 환수 조치, 민사 제재금, Raz의 등록 증권사 임원(이사) 취임의 영구 금지 등을 청구
- 해당 사건은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DOJ)에도 증권사기 및 전신사기로 형사 기소*

* 형사 기소에서는 고객·매출 허위와 문서 위조를 주로 다루고, SEC 제소에서만 AI 위싱 내용을 포함

- v. Albert Saniger(Nate,Inc.) (2025.4.9.)⁵ : 전자상거래 앱 네이트(Nate)를 AI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을 간소화하는 범용 쇼핑 카트 앱으로 홍보한 데 대해 허위·오해 소지 진술로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소송 제기
- 새니거는 네이트를 AI를 사용하여 다양한 리테일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구매를 완료하는 모바일 앱으로 설명하며, 앱 거래를 위한 처리에 머신러닝과 신경망 포함 AI에 기반하고 있다고 투자자 유치
- 해당 과정에서 앱의 자동화율을 90% 이상이라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모든 주문은 필리핀 및 기타 지역의 계약직 인력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확인
- 위원회는 증권법 제17조(a)항, 증권거래법 제10조(b)항과 하위 규칙 10b-5 위반을 들어 영구적 금지, 증권 발행, 매수, 청약, 매도 참여를 영구적으로 금지, 부당이득 및 선이자 환수, 민사 제재금 부과, 임원 또는 이사 재직 영구적 금지를 요구
- 본 사건은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DOJ)에도 증권사기 및 전신사기로 형사 기소되었으며, AI를 이용한 역량 허위 표시 등이 핵심

[해당 사건 관련 AI 위싱 언급]

“Saniger는 AI 기술의 가능성과 매력을 악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혁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러한 기만 행위는 무고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스타트업으로부터 자본을 빼앗고, 투자자들이 진정한 혁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하며, 궁극적으로 AI 개발의 발전을 저해한다.”, 매튜 포돌스키 뉴욕남부지방법검찰총장 대행

-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기만적 AI 주장 및 사기에 대한 단속(Operation AI Comply)
 - 연방거래위원회는 기만적 AI 주장 및 사기에 대한 단속을 통해 AI를 명목상으로 이용하거나 기만적, 불공정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AI 기술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 조치를 발표(2024.9.25.)

⁵ No. 1:25-cv-02937

- AI 워싱 관련 단속은 크게 AI 기반이라는 용어 사용을 투자 및 홍보의 유인으로 활용한 사례(Ascend Ecom, Empire)와 AI 도구를 기만적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DoNotPay, Rytr)로 구분
- v. DoNotPay, Inc. (2025.1.14.)⁶ : 세계 최초의 로봇 변호사라고 자사 구독 서비스를 홍보한 DoNotPay의 챗봇 기능에 대해 허위 광고를 중단하도록 하는 최종 명령
- DoNotPay는 소비자들에게 ‘변호사 없이 폭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유효한 법률 문서를 순식간에 생성할 수 있도록’, ‘2천억 달러 규모 법률 산업을 AI로 대체’하겠다고 자사의 AI 챗봇 서비스를 홍보
- 그러나 위원회는 AI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가 인간 변호사 수준과 동등한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변호사 고용이나 선임이 없어 해당 홍보 내용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허위광고로 판단
- 위원회는 DoNotPay가 증거 없이 전문 서비스를 대체한다는 주장을 금하고,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법률 관련 기능 제한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과 19만 3천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
- DoNotPay는 해당 내용에 대한 부인이나 인정 없이 합의안에 동의
- v. Ascend Ecom (2024.9.9.)⁷ : 연방거래위원회는 Ascend Ecom이 사명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자사 모델이 자체 구축한 AI 도구로 구동되어 사업 성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기만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 소송 제기
- 2021년부터 Ascend Ecom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와 AI를 활용하여 고객의 사업 성공을 극대화하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선두주자’라고 주장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의 온라인 상점 개설에 수만 달러 청구
- * Ascend Ecom, Ascend Ecommerce, Ascend CapBentures, ACV Partners, ACV, Accelerated eCom Ventures, Ethix Capital by Ascend, ACV Nexus 등
- 위원회는 2023년부터 Ascend Ecom이 자사 사업 모델이 최소 5종의 리서치 소프트웨어와 자체 구축한 AI 도구에 의해 구동된다고 주장하는 기만적 판매 홍보로 판단
- 이에 FTC법 제13조(b)항 등에 따라 피고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영구적 금지명령, 부당이득 환수 및 손해배상 포함 금전적 구제, 자산 동결 청구
- v. Empire Holdings Group LLC et al. (2024.9.18.)⁸ : AI에 의해 구동되는 온라인 상점과 검증된 전략으로 수익 창출을 보장한다고 허위 주장한 Empire Holdings Group LLC에 대해 소송 제기

⁶ FTC File No. 232-3042 Decision and Order Docket No. C-4812.

⁷ No.: 2:24-cv-07660SPG(JPRx)

⁸ No.: 2:24-cv-04949

- Empire Holdings Group은 자사 사업에 대해 AI에 의해 구동되며, 입증된 전략으로 수익 창출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입증 자료가 없는 허위 주장
- 이에 위원회는 영구적 금지 명령, 금전적 판결 및 기타 구제 조치를 요청
- v. Rytr(2024)⁹ : AI 기반 글쓰기 도우미 서비스로 소비자 리뷰를 무제한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 홍보에 대해 AI를 활용한 허위정보 및 소비자 오도 가능성에 FTC법 위반을 주장
 - Rytr은 구독자들이 소비자 리뷰를 자체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AI 기반 글쓰기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
 - 위원회는 AI를 이용한 허위 리뷰 생성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단 및 도구의 제공이며, FTC법 제5조(a)항에 위반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구성한다고 주장
 - 해당 제소에 Rytr은 해당 서비스 금지, 준수 보고서 제출 및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동의합의서를 체결
 - 다만, Rytr은 도구 제공자의 성격으로 여타 사례와 차이가 있고, 이후 FTC법 제5조 위반을 소명하지 못한다는 점과 인공지능 혁신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기존 명령을 취소(2025.12.22.)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인공지능 행동 계획(AI Action Plan)에 근거한 FTC의 첫 명령 취소 사례
- AI 허위·미입증 주장과 관련하여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추가 제재 사례
 - v. FBA Machine Inc.(2024.6.3.)¹⁰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온라인 스토어에 AI 기반의 사업 기회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허위 또는 미입증 주장
 - 상기 Empire 사례와 유사하게 위원회는 영구적 금지 명령, 임시 및 예비 금지 명령, 자산 동결 명령, 금전적 구제 및 기타 구제 조치 요청
 - 최종적으로 영업의 영구 금지 및 자산 환수에 합의(2025.7.)
 - v. Air AI Technologies, Inc. et al.(2025.8.25.): Air AI의 자사 인공지능 도구(Odin)의 에이전트형 AI(대화형 AI)가 대고객 서비스 직원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FTC법 및 텔레마케팅판매규칙(TSR) 법규 위반으로 소송 제기
 - Air AI의 자사 주력 제품인 대화형 AI가 실제 인력을 대체하고, 코칭 및 기타 서비스(대화형 AI 기술의 라이선스 판매 등) 결합으로 수익 창출 보장
 - 에이전트형 AI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 약속과 달리 결합으로 인해 라이선스 구매자 피해 발생
 - ※ 에이전트형 AI 결합 예시: 읽지 말아야 할 스크립트 읽기, 소비자 전화 연결 직후 끊기, 기본적인 소비자 정보 누락, 할루시네이션(답변이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오답 생성 등)

⁹ FTC File No. 232-3052

¹⁰ No. 2:24-cv-06635-JXN-LDW

- 위원회는 Air AI에 대해 영구 금지 명령, 법원 권한 내 금전적 구제 및 기타 구제 부여, 추가 구제 부여를 청구하였고, Air AI는 이에 합의(2026.3.)
- v. Workado, LLC(2025.4.28.) : 자사 AI 콘텐츠 탐지 도구의 탐지율을 98%라고 광고하였으나, 위원회는 해당 제품이 주장만큼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정확성 또는 효능에 대한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최종 명령(2025.8.28.)
- AI 콘텐츠 탐지도구가 AI 생성 텍스트를 98% 정확도로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위원회는 해당 AI 모델이 학술 콘텐츠만을 분류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에 일반 콘텐츠에 대한 독립 테스트 결과 정확도는 53%에 불과하다고 지적
- 이에 미입증된 AI 탐지 정확도 주장을 금지하고 입증할 만한 증거 보유 의무, 적격 소비자에 대한 합의 고지 통보, 준수 보고서 요구
- 기타 주 정부(텍사스 주) 차원의 합의 사례
 - Pieces Technologies 자발적 준수 확약(2024.8.21.): Pieces Technologies는 의료 종사자 임상 기록 요약 및 차트 작성을 돕는 자사 인공지능 어시스트 도구 광고의 오류율 수치가 텍사스 소비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텍사스 법무장관 지적에 향후 마케팅에 강화된 자발적 준수 보증(AVC)에 동의
 - Pieces Technologies가 텍사스 주 내 4개 이상 병원에 환자들의 실시간 데이터 기반 임상노트 요약 AI를 공급하며 정확도 지표 사용(심각한 환각률 <1/100,000, 치명적 환각률 <0.001% 등)
 - 해당 표시가 허위이거나, 오도적이거나, 기만적이었기 때문에 거래관행법(DTPA) 위반을 주장하며 텍사스 주 법무장관 명의(Ken Paxton)로 청원
 - Pieces Technologies는 위법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의료 분야 생성형 AI 관련 ‘자발적 준수 보증(Assurance of Voluntary Compliance)’에 합의

[자발적 준수 보증(AVC)]

- 5년 간 준수 동의
- (마케팅 및 광고) 자사 제품 및 서비스 광고에서 생성형 AI 제품 출력물을 설명하는 지표, 벤치마크, 또는 유사한 측정값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는 경우 (1) 해당 지표, 벤치마크, 측정값의 의미 또는 정의, (2) 방법, 절차, 기타 프로세스의 명확하고 눈에 띄는 공개
- (허위 표시의 금지) 제품의 기능, 특성, 테스트, 적절한 사용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오도적이거나 미입증된 표시를 금지
- (고객)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사용 또는 오용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는 문서를 고객에게 제공
- (기타) 확약 사본을 주요 임원, 경영 책임을 가진 모든 직원 및 사업체에 전달, 준수 모니터링

I 국내 사례

- 국내에서는 AI 워싱이라는 명목으로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제재 사례는 아직 없으며,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제도 정비 단계로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2025.11.7.)은 공동으로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 대상 AI 워싱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시정하고, AI 워싱과 관련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
 - 주요 7개 온라인몰(네이버, 롯데온, 11번가, 옥션, SSG닷컴, G마켓, 카카오, 쿠팡) 대상으로 2개월 간(2025.5월~7월) 모니터링한 결과, 총 20건의 의심 사례 발견
 - 단순 센서 기술 적용 등에도 AI 명칭을 포함하거나,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19건)
 - ※ 구체적 시정 사례: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을 'AI기능', 'AI/인공지능 모드'로 표기한 것을 '자동 온도 조절', '자동 온도 에코모드'로 수정
 - 제품에 탑재된 AI 기능의 작동 조건이나 한계 등 제한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1건)
 - ※ 구체적 시정 사례: 세탁기의 소량 세탁물에만 작동하는 AI세탁 모드의 제한사항을 미표시한 것을 제한사항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으로 시정
 - 적발된 사례에 대해 사업자 소명 과정을 거쳐 해당 표시·광고를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AI와 같은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표현에서 실증자료 요청을 주 요지로 하는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일부개정 시행(2026.9.3.)
- 현재 시행 중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2026.7.21.)을 살펴본 결과 간접적으로 AI 워싱과 관련되나, 직접적인 규제 근거로는 불충분하여 내용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AI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권리(제3조2)는 AI 워싱의 구조적 원인인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는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시 해당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고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호한 문구와 불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고 검증을 회피하는 AI 워싱 규율의 근거 가능성

-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제34조) 각 호의 조치를 살펴보면 AI에 의한 결과에 대한 설명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불투명한 정보나 검증되지 않은 성과를 주장하는 AI 워싱 사례는 미이행 사유로 분류될 가능성
- 다만, AI 기본법은 현재의 AI 워싱에는 직접적 규제 근거로는 불충분하여 내용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나 사업자 책무(제34조) 등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AI 워싱이 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반 소비재 영역은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에서 벗어남
 - AI 사용 사실의 고지는 AI를 쓰지 않으면서 AI를 쓴다고 거짓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AI 워싱을 직접적으로 타깃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음
- AI 워싱의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해외에서 법적으로 쟁점이 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검토하고, AI 기술과 시장의 확산 정도를 가늠하여 AI 기본법과 타법·고시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

0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고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AI 기술의 발전과 기업 내·외부에 가해지는 압박으로 산업 생태계 내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들의 구조적 행동으로 AI 워싱을 살펴봄
 - 민간 조직의 동형화 동기인 정당성, 경쟁 우위 확보, 투자 유치 등을 외부의 강압적 동형화, 선례 벤치마킹의 모방적 동형화, 전문가 네트워크 및 조직 문화 형성의 규범적 동형화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 데 의의가 있음
 - 다만, 실제 나타나는 AI 워싱은 단일의 동형화 메커니즘에 따라 나타나기보다는 복합적 기제로 작동한다는 현실에서의 전제가 필요하고,
 - 제도적 동형화 이론과 AI 워싱의 원인을 인과관계로 실증하기보다는 명제를 도출했다는 데 한계가 있어 기업 의사결정자 대상 조사, 과정 추적법을 통한 기업 분석 등 실증 연구가 후속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실제 국가별 AI 워싱과 관련한 법적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에서 법적 제재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고 AI, 머신러닝 등의 용어 사용으로 투자 유치, 수치나 기술력을 허위·과장하여 홍보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

- 미국, 유럽연합, 영국 모두 기존 법률을 근거로 AI 위상에 대한 조치 및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기존 법률로 AI 위상을 규제하고 있어 다소 안정적인 기초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기만적 AI 위상은 규제하되 기술과 산업 혁신 차원에서는 제재를 보류하려는 변화 포착
 - AI 관련 최상위 정책 가치가 '안전과 신뢰'에서 '혁신 및 영향력 확대'로 변화
 - 기존 법률을 근거로 AI 위상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기초는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기술과 산업 혁신 차원에서 기 집행 명령을 번복(취소)하는 등 제재를 보류하려는 움직임
 -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큰 틀에서 작동하는 기준 및 규제 환경 마련이 필요
- AI 위상 관련 법적 제재에 대해 공정한 시장 경쟁과 소비자 보호 차원의 규율·제재 필요성 의견과 기술 및 산업 혁신 필요에 따른 제재 보류 의견이 상존하는 만큼, 산업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고루 고려한 사회·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기업의 경우, 외부에서의 압력, 모호한 개발 단계에서 혁신적인 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위한 AI 위상은 오히려 기업과 기술 자체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야기하고, 규제 당국으로부터 규율·규제받을 수 있음을 이전 사례들을 통해 상기할 필요가 있음
 - AI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단순한 규제 회피를 넘어 해당 기업과 서비스 이용자 신뢰가 곧 기업의 자산임을 자각할 필요
 - 이를 위해 기업이 공시 자료, 홈페이지, 마케팅 채널 등을 통해 자사 AI 기술과 관련하여 표현할 때, 입증 가능한 표현을 하도록 부서별 크로스 체크 프로세스 구축(예: 컴플라이언스팀과 개발팀 체크)이나 필요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검토 가능
 - 또한 자사 AI 시스템의 한계와 인간 개입 필요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오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
 - 마지막으로 기술적 개념과 사용법 위주 뿐 아니라 주요 대상을 세분화하여 구체화한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개인 투자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시대 가치 있는 소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2025.11.7.). 'AI워싱' 의심사례 시정 및 부당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보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26.9.3.).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개정.
- 김태형. (2024). AI 워싱: 소비자를 기만하는 인공지능 마케팅. 소비자정책동향, (140), 1-25.
- 법무법인(유) 태평양. (2025.7.9.). 유럽연합 인공지능법(AI ACT)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Amazon. (2025.6.17.). "Message from CEO Andy Jassy: Some thoughts on Generative AI".
- Stanford University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2025 AI Index Report」.
- TechTarget. (2024.2.29.). "AI washing explained: Everything you need to know".
- The Guardian. (2026.2.8.). "US companies accused of 'AI washing' in citing artificial intelligence for job losses".
- Medium. (2026.3.2.). "Block's Layoffs Reveal the Great AI-Washing of Corporate America".
- Quantumzeitgeist. (2024.10.9.). "What is AI washing?".
- Elhajjar, S., & Itani, O. S. (2025). AI washing: A conceptual exploration. AMS Review, 1-20.
- Elsayed, N. (2026). AI Washing and the Erosion of Digital Legitimacy: A Socio-Technical Perspective on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in Business. arXiv preprint arXiv:2601.06611.
- Ozturkcan, S., & Bozdağ, A. A. (2025). Responsible AI in marketing: AI booing and AI washing cycle of AI mistrust.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67(6), 696-722.
- Delmas, M. A., & Burbano, V. C. (2011). The drivers of greenwashing.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54(1), 64-87.
- Bietti, E. (2020.1.). From ethics washing to ethics bashing: a view on tech ethics from within moral philosophy. In Proceedings of the 2020 conference on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pp. 210-219).
- George, B., Baekgaard, M., Decramer, A., Audenaert, M., & Goeminne, S. (2020). Institutional isomorphism, negativity bias and performance information use by politicians: A survey experiment. Public administration, 98(1), 14-28.
- DiMaggio, P. J., & Powell, W.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160.
- Frumkin, P., & Galaskiewicz, J. (2004).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public sector organization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4(3), 283-307.
- Campbell, J. L. (2007). Why would corporations behave in socially responsible ways? An institutional theor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3), 946-967.
- Wright, C. E., & Wilkie, B. (2025). Small worlds: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Australia's corporate elite, 1910-2018.

Business History, 67(5), 1270–1293.

The Coca-Cola Company. (2023.9.12.). “[Press release]Coca-Cola Creations imagines year 3000 with new futuristic flavor and AI-powered experience”.

Hurler, K.(2023.9.25.). “Coca-Cola’s new AI-generated soda flavor falls flat”. Gizmodo.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24.3.18). In the matter of Delphia (USA) Inc. (Investment Advisers Act Release No. 6573).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24.3.18). In the matter of Global Predictions Inc. (Investment Advisers Act Release No. 6574).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24.2.2). SEC charges founder of American Bitcoin Academy online crypto course with fraud targeting students.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24.6.11). SEC charges founder of AI hiring startup Joonko with fraud (Press Release No. 2024–70).

U.S. Attorney’s Office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2024.6.11). Founder and former CEO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mpany charged with securities fraud (Press Release No. 24–210).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Trade Commission. (2024.9.25). FTC announces crackdown on deceptive AI claims and schemes [Press release].

Federal Trade Commission. (2024.9.25). Complaint: In the matter of DoNotPay, Inc.

Federal Trade Commission. (2024.9.25). Complaint: FTC v. Ascend Ecom LLC, et al. (File No. 2423023).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Federal Trade Commission. (2024.9.25). Complaint: FTC v. Empire Holdings Group LLC, et al. (File No. 2423027).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

Federal Trade Commission. (2024.9.25). Complaint: In the matter of Rytr LLC (File No. 2323052).

Federal Trade Commission. (2024.6.. Complaint: FTC v. Bratislav Rozenfeld, et al.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w Jersey.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25.4.11). Alberto Saniger Mantinan, a/k/a Albert Saniger (Litigation Release No. 26282).

U.S. Attorney’s Office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2025.4.9). Tech CEO charged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vestment fraud scheme (Press Release No. 25–082). U.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Trade Commission. (2025.8.25). FTC sues to stop Air AI from using deceptive claims about business growth, earnings potential, and refund guarantees to bilk millions from small businesses [Press releas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of Texas. (2024.9.18). Attorney General Ken Paxton reaches settlement in first-of-its-

kind healthcare generative AI investigation [Press release].

Federal Trade Commission. (2025, December 22). FTC reopens and sets aside Rytr final order in response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AI Action Plan [Press release].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OJ L, 2024/1689, 12.7.2024.

European Commission. (2025.2.4). Commission guidelines on prohibited artificial intelligence practices established by Regulation (EU) 2024/1689 (AI Act).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n.d.). About the ASA and CAP. 최종 검색일 2026.7.24. <https://www.asa.org.uk/about-asa-and-cap/about-regulation/about-the-asa-and-cap.html>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n.d.). Misleading advertising. 최종 검색일 2026.7.24. <https://www.asa.org.uk/advice-online/misleading-advertising.html>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2024.4.29). CMA AI strategic updat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ma-ai-strategic-update/cma-ai-strategic-update>

NPR. (2025.10.28.). "Amazon is laying off about 14,000 corporate workers".

Fortune. (2026.2.27.). "Jack Dorsey lays off 40% of Block, saying AI has changed the game: 'Intelligence tools have changed what it means to build and run a company'".

The Guardian. (2026.3.3.). "What was really behind Jack Dorsey laying off nearly half of Block's staff?".

KISDI Perspectives 발간 내역

KISDI Perspectives는 국내외 정보통신미디어 관련 주요 정책 및 동향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문의: 노희윤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실, hyooooon@kisdi.re.kr, 043-531-4042)